

독도와 한일관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고찰

곽진오*

(e-mail: ojkwak@nahf.or.kr)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강화조약 제 21조와 독도 |
| 2. 독도와 강화조약 | 4. 결론 |

키워드: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 韓国條項, 獨島, 鬱陵島, 日本

1. 서론

샌프란시스코 講和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이하 강화조약)¹⁾은 전승국인 연합국 측 51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일본의 전후처리를 위한 최종합의를 이끌어내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냉전의 격화와 중국의 공산화는 강화조약의 성격이 퇴색하여 講和보다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反共에 중점을 둔 것이며, 미국이 중심이 된 조약이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²⁾ 그리고 2차세계대전중 일본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본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은 지금도 한·일과 중·일간에 과거사가 현안의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 다수국가와 일본이 서명하고 이듬해인 4월 28일 동 조약이 발효되어 미군에 의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이 조약은 대일평화조약(対日平和條約, Treaty of Peace with Japan) 또는 대일강화조약(対日講和條約, Treaty of Peace with Japan)이라고도 하는데, 전승국인 연합국 측과 패전국인 일본이 모두 평화를 강요하거나 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조약은 우여곡절 끝에 1951년 9월 8일 참가국 중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제외한 48개국이 최종합의문에 서명하여 체결되었다.

2) 정병준(2010) 『독도1947』, 돌베개, p.139.

일본점령은 종료되어 일본은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화조약 이후 일본이 당시 연합국과 약속했던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국가로 재탄생하였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불일이다. 이유는 한일양국관계에서만 보더라도 일본은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공개한 2016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남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や竹島の領土問題が依然として未解決のまま存在している。』”³⁾고 밝히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래 12년째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 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독도는 전후 한국이 영유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일 간에는 여타의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⁴⁾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강화조약당시 독도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에 따른 문제이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연합국과 일본이 강화조약체결에 즈음해서 발표한 총 7개장과 27개문으로 구성된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해 언급이 없으며 第2章 영역부분의 第2조에“(조선, 대만 및 팽호제도, 치시마열도 및 화태, 위임통치, 남극지역, 新南군도⁵⁾ 및 남사군도) (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放棄한다.”⁶⁾로 되어있다.

위의 조항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기되었는데,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후 한국과 일본은 이른바 (a)조항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로 외교의 현안을 맞기도 한다. 이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조약은 어디까지나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최대피해국인 한국이 강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은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독도 관련 연합국 측의 초안을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성된 초안은 1차에서 5차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로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이 공산화 되고 일본의 로비가

3) 防衛白書(2016) 『日本の防衛』, 防衛省, p.3.

4) 한국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검색일2015.10.03.)

5) 일본이 태평양전쟁당시 남사군도(南沙群島)에 붙였던 이름.

6) 강화조약 제2장 領域조항 제2조 (a)항, 여기서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기에 한국에 대해서 ‘조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毎日新聞社編(対日平和条約, 1952) 毎日新聞社刊, p.4.

집요하게 시작된 시점에서는 독도의 소유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로비가 필수로 여겨지는 국제외교 논리로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은 강화조약체결 당사자로 초대받지 못했고 동시에 강화조약이 소련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냉전을 의식한 반공에 중점을 둔 강화조약으로 이 조약은 국제사회의 기회균등원칙이라는 사회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⁷⁾

이 논문은 이하 몇 가지 분석을 통해서 강화조약에 따른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주장의 한계를 알아보려 한다. 첫째, 강화조약이 일본제국주의의 최대피해국가인 한국을 초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보니 일본의 입장만이 반영되면서 한때는 독도관련 초안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 강화조약 제 21조⁸⁾분석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려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신용하(1996), 이종학(2000), 송병기(1999·2004), 나이토세이추·김병렬(207), 나이토세이추·박병섭(2007), 나이토 세이추(2008), 최장근(2008·2010)등이 있으나 상기 연구는 강화조약 제 21조에 대해 한국입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론도출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강화조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이 학계에 기여 할 수 있는 점은,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한일양국 학자들 사이에 그간 논쟁이 되었던 독도관련 강화조약의 재구성을 가능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서론에서 강화조약관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본론에서는 강화조약 제 21조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한계를 밝히고, 결론에 즈음해서는 강화조약관련 영토조항이 일본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2. 독도와 강화조약

강화조약관련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주로 조약체결에 가까운 1950년에서 1951년의 독도관련 기록에 맞춰지고 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동아시아의

7)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Joseph Stoltman. *Aspiring for a Harmonious Global Society: The Role of Geography Education*(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October 2014). p.8.

8) 제 21조(중국 및 조선에 관한 특례). 이 조약의 제 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국은 제 10조 및 제 14조(a)2의 이익을 받은 권리를 갖고 조선은 이 조약의 제 2조, 제 4조, 제 9조 및 제 12조의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

공산화를 우려했던 미국이 일본사회에 역코스정책⁹⁾을 적극지지하고 한국전쟁이 또 다른 제3차 세계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시기와 맞물려있다. 그러나 강화조약과정에서 독도관련 초기 초안은 독도가 명백히 한국영토임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때 까지는 미국이나 연합국의 주요 국가들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했다. 특히 강화조약의 초기 독도관련 초안은 미국 국무성이 주도했는데, 1947년 3월 20일 제작된 제1차 초안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제5차 초안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1949년 말 당시 주일정치고문이며 맥아더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윌리엄 J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 1901-1980)가 1949년 11월 14일 미국의 윌리엄 월턴 버트워스(William Walton Butterworth, 1903-1975) 미국 국무부 극동차관보에게 독도에 관한 의견을 전보로 보내면서 조약 초안의 방향은 요동치기 시작한다.¹⁰⁾ 시볼드는 그의 전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버트워스에게 설명한다.

【자료1】 시볼드 전문 중 일부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conceivably envisage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on.

리앙투르 록스(다케시마)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다

.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전부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기상관측소와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가 바람직하다.

“위의 자료 1의 전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시볼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상관측이나 레이더 기지로 독도를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즉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독도가 일본의 소유일 때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9) 1947년부터 미군정은 일본에서의 전후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이는 냉전이 아시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기존에 시행해오던 구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산을 중단하고 일본사회안정화정책이라는 역코스정책을 펴게 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는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대해 정간을 명령하였고, 일본공산당 중앙위원 24명을 공직에서 추방했다. 한국전쟁이 계속되자 레드 퍼지(red purge, 공산주의자 추방)는 정부기관·언론사·민간기업 부문에까지 확대되어 총 1만 972명이 추방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는 일본에 7만 5천 명의 경찰예비대를 설치하고, 해상보안청 요원 8,000명의 증원을 지시하였다. 이는 한국전쟁에 주일미군이 투입되면서 후방 기지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10) 전게서, 정병준(2010) p.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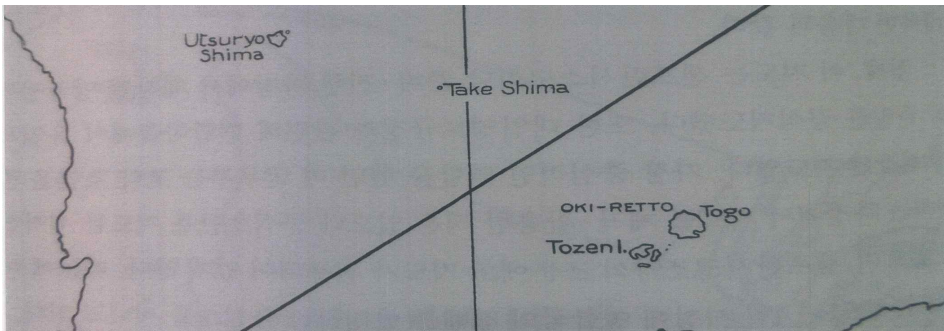
정부의 외교노력으로 시블드의 전문 이후 1949년 12월 8일 작성된 제6차 초안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었다. 하지만, 1949년 12월 19일 작성된 제7차 초안에서는 다시금 한국의 영토로 돌아온다. 그리고 같은 달 12월 29일 시블드는 독도에 대해 두 번째 전보를 미국국무성으로 발송하였고, 제8차 초안과 제9차 초안에서 독도는 다시금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었다. 결국 제10차 초안부터는 독도 명기 자체가 사라지고 1951년 9월 8일 조인된 강화조약 최종안에서도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자료2】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¹²⁾

제 1차 초안(1947.03.20) : 한국영토	# 시블드 2차 전문(1949.12.29)
제 2차 초안(1947.08.05) : 한국영토	= 제 8차 초안 (1949.12.29) : 일본영토
제 3차 초안(1948.01.02) : 한국영토	= 제 9차 초안 (1950.01) : 일본영토
제 4차 초안(1949.10.13) : 한국영토	제 10차 초안 (1950.08.07) : 명기 없음
제 5차 초안(1949.11.02) : 한국영토	제 11차 초안 (1950.09.11) : 명기 없음
# 시블드 1차 전문(1949.11.19.)	제 12차 초안 (1951.03) : 명기 없음
= 제 6차 초안 (1949.12.08.) : 일본영토	제 13차 초안 (1950.05) : 명기 없음
제 7차 초안 (1949.12.19.) 한국영토	제 14차 초안 (1951.06.) : 명기 없음
강화조약 최종 조약문(1951.09.08.) : 독도 명기 없음	
독도 한국영토 6회 / 독도 일본영토 3회 / 독도 명기 없음 5회 / 최종조약문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과는 별도로 영국과 영연방을 중심으로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51년 4월 7일에 작성된 영국의 초안에서 독도는 분명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¹³⁾

【자료3】 영국 외무성 대일평화조약 초안 첨부지도(1951. 3)¹⁴⁾



11) 2015년 10월 2일(2015년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회 프로씨딩스 발제)

12) www.mofa.go.kr(검색일2015.10.12.)

13) 전개서, 정병준(2010) p.557.

14) 전개서, 정병준(2010) p.557.

하지만 미국 주도의 초안과 영국 주도의 초안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양측이 두 달 동안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합동토론회를 열었고 최종합의안에서 독도에 대한 명기는 사라졌다. 강화조약 최종안이 나오기까지의 초안 작성 과정을 정리하면 처음 1차, 2차, 3차, 4차, 5차, 7차는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고, 6차와 8차, 9차에서는 일본 영토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10차 이후부터 최종안까지는 독도에 대한 명시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볼드가 미국 국무성에 보낸 두 번의 전문이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의 존재를 조약문에서 지우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추측되며 결국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내부의 의견불일치로 최종 조약문에서도 독도는 명기되지 않았던 것이다.¹⁵⁾ 하지만 시볼드가 미국 국무성에 로비하기 이전까지 미국이 작성했던 모든 초안의 내용과 영국이 주도했던 초안의 내용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는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국에서 발견된 강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유일한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렇다면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 그리고 7차 초안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된 근거가 무엇이였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하 몇 가지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하자. 첫째, SCAPIN677호가 근간이 되었을 수 있다는 입장은, 우리가 논의하는 독도관련 첫 초안이 위의자료 2에서 보듯이 1947년 3월 20일 이지만 실은 독도관련 첫 초안이 작성된 시점은 이보다도 50여일 이른 동년 1월 30일 이었다. 이른바 독도관련 이 첫 초안 작성자는 ‘국무부 極東局 일본과의 로버트 피어리(Robert A. Fearey)였는데 이 초안은 당시 対日条約集團이 작성하고 있던 평화조약 초안의 제1장 영토조항, 즉 일본의 영토범위를 다룬 초안으로 그 핵심은 일본에 포함될 섬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점이었다.’¹⁷⁾

이 초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제1조의 1에서 일본영토를 1894년 1월 1일 이전의 영토로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카이로선언에서 명시한 만주·대만·펑호도 등 중국에서 도취한 일체의 지역에서 구축된다고

15)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된 문서나 증언이 없지만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10차 초안 이후 독도에 대한 소속이 사라진 이유는 첫째, 독도가 한일양국의 현안이 되자 연합국 측이 강화조약의 조기종결을 위해서, 둘째,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들 중 무인도 보다는 유인도 중심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위의 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증언 또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16) 2015년 10월 2일(2015년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회 프로씨딩스 발췌)

17) 전게서, 정병준(2010) p.402.

했을 때의 기산일(起算日)인 청일전쟁(1894)을 기점으로 한 것이다. 둘째, 일본의 영토는 혼슈·규슈·시코쿠·홋카이도 등 주요 섬과 부근 제도(諸小島)로 하지만 쿠릴열도는 배제하며, 류큐(琉球)제도와 세토나이카이(Inland Sea, 瀬戸内海)의 모든 섬, 레분(Rebun, 禮文島), 리이시리(Riishiri, 利尻島), 오키지리(Okujiri, 奥尻島), 사도(Sado, 佐渡島), 오키(Okii, 隱岐), 쓰시마(Tsushima, 対馬島), 이키(Iki, 壱岐), 고토군도(Goto Archipelago, 五島群島)를 포함한다고 했다. 일본령에 대한 1947년 1월 영토초안의 규정은 1949년 까지 지속되었다.”¹⁸⁾ 그리고 자료2에 의하면 독도가 한국영토로 인정된 독도관련 6개 초안을 합해 총 14개로 분류 되어 있지만 혹자는 20여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독도가 한국영토로 분류된 초안만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아래 자료는 이를 방증하고 있다.

【자료4】 1947~49년 미국부부의 평화조약 초안 및 관련 문서의 독도표기¹⁹⁾

구분 \작성일	표기된 제목	독도 귀속	성격	출처
1947.1.	Draft: Territorial Clauses	한국	국무부 작업단 초안 한국령 최 초명시	Lot 56D527, Box 1.
1947.3.19	Peace Treaty with Japan	한국	국무부 내부검토용(동경 송부)	740.0011PW(Peace)/3-2047 Lot 56D527, Box 1.
1947.7.24.	Draft of Treaty with Japan	한국	국무부 지리전문가 보그스의 검토	Lot 56D527, Box 5. 740.0011PW(Peace)/7-2447
1947.8.1.	Draft Treaty of	한국	국무부 내부검토용 해군 부 검토	Lot 56D527, Box 1.
1947.8.5.	Peace with Japan			740.0011PW(Peace)/8-647
1947.10.14.	PPS/10, Results of Planning Staff Study of Questions Involved in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	침 부 지 도 한국	국무부 정책문서(유일한 미 국무부 영토 표시 지도)	740.0011PW(Peace)/10-2447
1947.11.7.	Draft Treaty of Peace for Japan	한국	국무부 내부 검토용	Lot 56D527, Box 1.
1947.11.19.	Redraft	한국	국무부 내부 검토용	Lot 56D527, Box 5.
1948.1.2.	re-draft 2 January	한국	국무부 내부 검토용	Lot 56D527, Box 3.
1948.1.8.	The Japanese Peace Treaty Draft	한국	국무부 내부 검토용	740.0011PW(Peace)/1-3048
1949.10.13.	Treaty of Peace with Japan	한국	국무부 내부 검토용	740.0011PW(Peace)/10-1449
1949.11.2.	Treaty of Peace with Japan	한국	국무부 제외공관 송부	740.0011PW(Peace)/11-249

18) 전개서, 정병준(2010) p.403.

19) 출처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File, 740.0011PW(Peace) series; RG 59, Office of

그러나 강화조약당시 협상에 참석하지 못했던 한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기위해서는 강화조약 독도관련 첫 초안에서 독도가 어떤 근거로 한국영토로 포함되었는지이다. 이하내용은 위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일본은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카(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07.26)을 수용하여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포츠담선언 제8항에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²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일처리방침의 기본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ar in 1914) 태평양의 도서’ 일체와 폭력과 탐욕으로 점령해 온 나머지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을 축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²¹⁾

또한 연합국은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연합국의 최고지사 결정기관으로 극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연합군최고사령부를 통해 제반업무를 집행하였는데,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이후 ‘SCAPIN’) 제677호 「일정 외곽지역을 일본의 통치 및 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지령(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을 발령한다. 발령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 5참조).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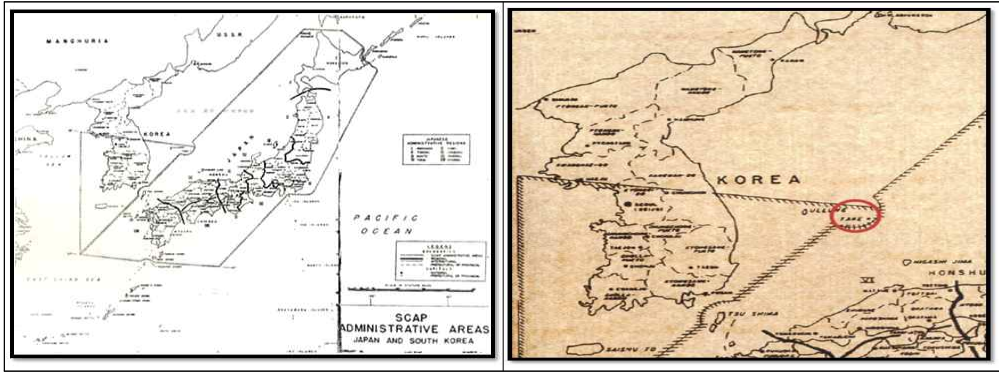
Northeast Asia Affairs, Records Relating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Subject File, 1945-51, Lot 56D527.” 재인용, 전개서, 정병준(2010) p.400.

20) 포츠담선언 제8항.

21) 정일화 (2010). 대한민국 독립의 門 카이로선언(선한약속출판).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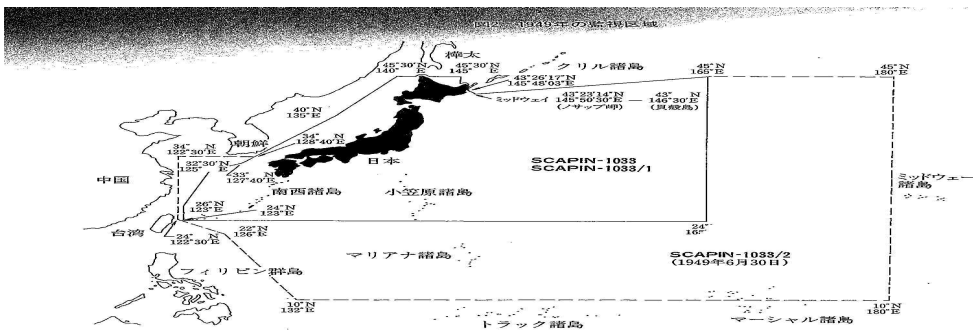
22) SCAPIN 제677호는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4개의 주요 섬(혼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쓰시마,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제도 등을 포함한 1000여 개의 부속 섬을 포함하고, (a)울릉도, 독도, 제주도, (b)북위 30도 이남의 류큐제도, 이즈...(생략)...시코탄을 포함하지 않는다.”로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있다.

【자료5】 SCAPIN 제677호 중 일부와 훈령 작성 시 사용된 지도



SCAPIN은 일본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4개의 주요 섬과 1000여개의 부속 섬을 제외한 일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정치와 행정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5, SCAPIN 작성 시 사용된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는 제주도 울릉도 등 한국의 다른 섬들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에 발령된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SCAPIN) 제1033호 「일본의 어업과 포경이 허가된 구역(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은 일본의 선박과 승무원이 독도에 접근하지도 접촉하지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자료6】 SCAPIN 제1033호23)



23) SCAPIN 제1033, 이른바 맥아더라인은 “일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그 섬에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CAPIN 제1033, 이 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 정영미 연구위원 제공.

이와 같은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는 조약과 같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측이 일본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토처리방침과 정책의지를 반영한 지침이라는 측면에서 평화조약의 영토 조항을 해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²⁴⁾

3. 강화조약 제 21조와 독도

本章에서는 강화조약 제 21조분석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 해당조약문을 통해서 한국이 독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래 각주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강화조약 제 21조는, “(중국 및 조선에 관한 특례)로,²⁵⁾ 이 조약의 제 25조²⁶⁾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 10조 “(중국에 있어서 특수권익의 방기), 일본은 1901년 9월 7일 북경에서 서명한 최종의정서 및 이를 보충하는 모든 附屬書, 서간 및 문서의 규정에서 생기는 모든 이득 및 특권을 포함해서 중국에 있어서의 모든 특수 권리 및 이익을 방기하고 또한 이전에 기록한 의정서, 부속서, 서간 및 문서를 일본국에 관해서 파기하는 것을 동의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해 연합국의 전승국 일원으로 취급한 단계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그리고 제 14조(배상능력결여, 役務배상, 연합국에 있는 일본재산의 처분, 연합국에 의한 청구권 방기)(a)2 조항 또한 중

24) “SCAPIN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본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배제시키고 그 후에 이들의 효력을 변경하거나 부인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 전후 영토문제를 처리하는 1951년 강화조약에서조차도 명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정갑용 2008:130)

25) 강화조약 제 21조는, “(중국 및 조선에 관한 특례)이다. 이 조약은 제 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 10조 및 제 14조 (a)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조선은 이 조약의 제 2조, 제 4조, 제 9조 및 제 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로 되어 있다.

26) 제 25조(연합국의 정의), “이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라 함은 일본국과 전쟁했던 나라 또는 이전에 제 23조에 列記(열기)한 나라영역의 일부를 지칭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국가가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또는 이에 비준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1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이 조약은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도 취서는 안 된다. 또 일본의 어떠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도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이전과 같이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감소되고 또는 해가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p.20~21.

국에 대한 전승국차원 취급인데, “(I)다음의(II)의 규정을 유보하고, 각 연합국은 다음과 같이 열거되는 모든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이 조약의 최초 효력발생 시점에서 그 관할아래 있는 것을 압류, 유치(留置) 청산하고 그 이외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a) 일본 및 일본국민, (b) 일본 또는 일본국민의 대리자 또는 대행자 등, (c) 일본 또는 일본국민이 소유하고 또는 지배하는 단체. 이(I)에 명기한 재산, 권리 및 이익은 지금 봉쇄되었거나, 소속이 바뀌고 또는 연합국의 敵産管理当局의 점유 또는 관리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자산이 当該当局의 관리아래 놓였을 경우에 前述 의(a), (b)또는 (c)에 해당되는 누구 또는 단체에 속하게 되고 또한 이를 위해 보유되거나 또는 관리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II) 다음은 이전에 기술한 (I)에 명기한 권리에서 제외한다. (i) 일본이 점령했던 영역이외의 연합국의 一國의 영역에 해당정부의 허가를 얻어 전쟁 중에 거주한 일본(自然人)의 재산, 단 전쟁 중에 제한을 받거나 또는 이 조약의 최초효력발생일에 이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재산을 제외. (ii) 일본정부가 소유하고 또는 외교목적이나 영사(領事)목적에 적용된 모든 부동산, 가구 및 비품 등 일본의 외교직원 또는 영사직원이 소유한 모든 개인의 가구 및 용구류, 그 이외의 투자적성질(投資的性質)을 갖지 않은 사유재산으로 외교기능 또는 영사기능 수행에 통상필요로 했던 것. (iii) 종교단체 또는 사적자선단체에 속해서 계속해서 종교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재산. (iv) 관계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있어서 1945년 9월 2일 이후의 무역 및 금융관계 재개결과로 일본의 관할내로 들어간 재산, 권리 및 이익, 단 해당연합국의 법률에 반한 거래로 얻은 것은 제외. (v) 일본 또는 일본국민의 책무, 일본에 소재(所在)하는 유체재산(有体財産)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 일본의 법률에 기초해 조직된 기업에 관한 이익 또는 이와 관련된 증서(證書). 단 이 이외는 일본의 통화로 표시된 일본 및 그 국민의 채무(債務)만이 적용된다. (III) 이전에 밝힌 예외 (i)에서 (v)까지 언급한 재산은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반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재산이 청산된 경우에는 대신해서 매매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IV) 앞서 기술한(I)이 규정한 일본재산을 압류, 유치(留置), 청산해서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는 해당 연합국의 법률에 따라서 행사되고 소유자는 이러한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만을 갖는다. (V) 연합국은 일본의 상표 및 문학, 미술저작권을 각국의 일반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본소유로 취급되는 것을 동의 한다. (b) 이 조약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 중 일본 및 그 국민이 취한 행동에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

이외의 청구권 또는 점령의 직접군비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방기한다.”²⁷⁾ 위의 내용은 당시 중국이 내전상태였기에 국민당 측이나 공산당 측 어느 쪽도 강화회의에 중국대표권을 행사 할 수 없었기에 중국은 전승국으로써 연합국에 합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중국이 공산화되고 냉전으로 대만(台灣)이 미국 측의 우방국이 되면서 대만정부가 중국을 대표해서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에 서명한다.²⁸⁾ 그러나 한국은 당시 전쟁상태 이었기에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1년 후에 미국주선으로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이 개최되었다. 한일회담은 초기부터 한일양국 정부의 상대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제2차 한일회담(1953.4.15~7. 23)에서는 평화선(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 또는 이 라인으로 부른다)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 되었는데 당시 평화선 선포로 가장 크게 반발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이 이처럼 반발했던 이유는 몇 달이 지나면 맥아더라인²⁹⁾이 철폐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³⁰⁾ 일본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평화선과 독도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영해 3해리의 시대였는데 평화선은 한국해안에서 50~100해리에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반대 성명을 내고 한국 대표부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구상서(口上書)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의 평화선 조치는 연합국의 정책에 의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었고 단지 한국정부에 대해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중지를 요청하는 항의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1월 28일 첫 번째 공식 항의성명을 내고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였다.³¹⁾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27)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p.12~13.

28) 중일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은 중화민국과 일본이 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상태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체결된 조약이다. 중일평화조약 또는 타이베이화약(台北和約) 으로도 불린다. 일본에서는 일본국과 중화민국과의 사이의 평화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952년 4월 28일에 타이베이에서 조인되어 1952년 8월 5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1972년 9월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이 중일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자, 중화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단교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력이 중지되었다.

29) 맥아더 라인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의 문서 SCAPIN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인가 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 정해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이다. 이 선은 1946년 6월과 1949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확대되었다. 1946년 8월 남빙양포경(南氷洋捕鯨)이, 1950년 5월 남양의 母船式 참치어업이 이 선을 넘어 조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되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이 맥아더라인의 소멸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한국은 맥아더라인이 강화조약발효이후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1952년 4월 평화조약 발효와 더불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30)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I』 동북아역사재단, p.1195.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때부터였다.

한편 강화조약 21조에서의 독도는, 조선은 “이 조약의 제 2조 (조선, 대만 및 팽호제도(澎湖諸島), 치시마열도 및 화태(樺太), 위임통치, 남극지역, 신남군도(新南群島) 및 남사군도(南沙群島), (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해 모든 권리, 권원 또는 청구권을 방기한다. (b) 일본은 대만 및 팽호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 (c) 일본은 치시마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화태의 일부 및 이에 근접한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 (d)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에 관련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하고 단 이전에 일본의 위임통치아래 있던 태평양제도(諸島)에 신탁통치제도(制度)를 취했던 1947년 4월 2일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수락한다. (e) 일본은 일본국민의 활동에서 유래했던지 또는 다른 곳에서 유래 했던가를 불문하고 남극지역의 모든 부분에 대한 권리 또는 권원 등 모든 부분에 관한 이익에 대해서도 모든 청구권을 방기한다. (f) 일본은 신남군도 및 남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³²⁾ 제 4조, “(구 영토에 있는 재산, 해저전선), (a) 이 조의(b)의 규정을 유보하고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이 제 2조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것 등 일본 및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포함)해서 현재 이들 지역의 시정(施政)을 행하고 있는 당국 및 그 주민(법인을 포함)에 대한 처리 및 일본에 있어서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재산 및 일본의 그 국민에 대한 일련의 당국과 주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이들 당국과의 사이에 특별취급주제로 한다. 제2조에서 예로 들고 있는 지역에 있는 연합국 또는 그 국민의 재산은 아직 반환되어지지 않는 한 시정을 행하고 있는 당국이 현장에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라는 말은, 이 조약에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법인을 포함한다). (b) 일본은 제 2조 및 제 3조에서 말하는 지역에 있는 합중국군정부에 의해 또는 그 지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 (c) 일본과 이 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지배에서 배제되는 영역 등을 연결하는 일본소유의 해저전선은 兩分되어져 일본은 일본의 終點施設 및 여기에 연결된 전선의 반을 보유하고 분리된 영역은 남은 전선 및 그 중점시설을 보유한다.”³³⁾ 제 9조, “(어업협정), 일본은 공해에 있어서 어렵(漁獵)의 규제 또는 제

31) 獨島關係資料集(I)-往復外交文書(1952~76) p.1.

32)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4.

한 등의 어업의 보존 및 발전을 규정하는 양국 간 및 다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희망하는 연합국과 신속하게 교섭을 개시하기로 한다.”³⁴⁾ 제 12조“(과도기에 있어서 通商航海관계), 일본은 각 연합국과 무역, 해운 그 이외의 통상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놓기 위해 조약 또는 협력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신속하게 개시 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 (b) 해당하는 조약 또는 협정이 체결 될 때 까지 일본은 이 조약의 최초 효력발생이후 4년간, (1) 각 연합국 및 그 국민, 상품(產品) 및 선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 (i)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또는 이에 관련한 관세, 과금(課金), 제한 그 이외 규제에 관한 최혜국대우. (ii) 해운, 항해 또는 수입화물에 관한 내국민대우 및 자연인, 법인 및 그 이익에 관한 내국민 대우. 이 대우는 세금의 부과 및 징수, 재판을 받을 때와 계약체결 및 이행, 재산권(有体産業 및 無体産業에 관한 것), 일본의 법률에 기초해 조직된 법인 참가 등 일반에 여러 종류의 사업 활동 및 직업 활동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2) 일본의 국영상기업의 외국에 있어서 매매가 상업적으로 고려된 것만을 확보한다. (c) 더 나아가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일본은 연합국이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의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의무를 지기로 한다. 전단(前段)에서 정한 상호주의는 연합국의 일본 본토이외지역의 상품, 선박, 법인 및 그곳에 주소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및 연방정부를 갖는 연합국의 나라 또는 주(州)의 법인 및 그곳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역, 나라 또는 주에 있어서 일본에 부여되는 대우에 비추어서 결정된다. (d) 이 조(條)의 적용상 차별적 조치에 있어 그것을 적용하는 당사국의 통상조약에 通常規定된 예외에 기초한 것, 그 당사국의 대외적 재정상태 또는 국제수지를 보호할 필요에 기초한 것(해운 및 항해에 관한 것은 제외) 또는 중대한 안전상의 이익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태에 상응하기에 필요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 한 각각의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의 허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e) 이 조에 기초한 일본의 의무는 이 조약의 제14조에 기초해 연합국의 권리행사에 따라 영향 받지 않는다. 또한 이 조약의 규정은 이 조약의 제15조에 의해 일본이 이어받는 약속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³⁵⁾ 의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³⁶⁾

33)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p.5~6.

34)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9.

35)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9.

위의 강화조약관련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교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으로는 제2장(領域)부분의 2조(a)³⁷⁾의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 이라는 사실을 일본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17세기 이래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 즉, “1660년의 오야(大谷甚吉) 무라카와(村川市兵衛) 두 어부가문의 왕복서한에는 ‘죽도안의송도(竹島之内松島/竹島近所之小島)’라고 기록되어있다.”³⁸⁾ 또한 1877년 발행된 ‘태정관(太政官)문서’³⁹⁾인데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竹島外一島之義 本邦關係無之義ト 可相心得事)을 밝히고 있다. 이는 1696년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울릉도쟁계(鬱陵島争界)(일본에서는, 죽도일건(竹島一件)’의 결론에 따른 결정이었다.⁴⁰⁾ 특히 「태정관지령문」에 첨부된 「기죽도약도」는 정확히 「죽도의일도」로써 기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명칭과 함께 상세히 그려져 있다. 만일 「죽도의일도」가 두 개의 명칭을 가진 울릉도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부속지도에서 송도에 대한 상세 그림은 그려 넣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일본 내무성이 처음 시마네현에 지적편찬에 관한 조회서를 보냈던 당시(1876.10.5.), 죽도(울릉도)에 관해서만 문의하고 있음에도, 시마네현은 또 하나의 섬 송도(독도)에 대해 언급하고(첨부서류의 개요 부분), 1876년 10월 16일 내무성에의 문의서 제목에 「죽도의일도」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마네현 『죽도관계자료(竹島關係資料)』의 문서에서도 ‘외일도’를 ‘송도(松島)」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로써 당시의 일본정부 각 성청에서 사용되던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분석해 보더라도 해군성을 제외한 일본정부 특히 내무성, 외무성, 태정관에서는 명칭혼란이 없이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문」의 「죽도의일도」는 당시 일본 정부가 ‘죽도’라고 불렀던 울릉도와 ‘송도’라고 불렀던 독도를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부 일본 우익학자「죽도문제연구회」들은 독도가 아니라는 공백

36)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19.

37)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리 및 청구권을 放棄한다.”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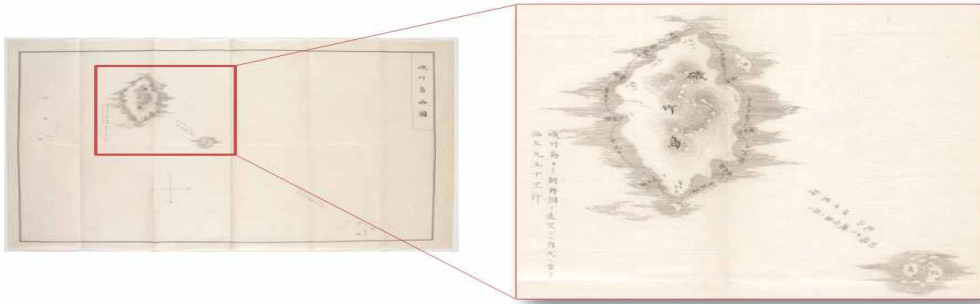
38) 内藤正中(2008) 『竹島=独島問題入門 日本外務省竹島批判』新幹社. p. 23.

39) 1876년 10월 5일 근대화된 체제정비를 하던 메이지 행정부의 내무성이 지적편찬을 위해 시마네현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 즉 「죽도의일도」에 관한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내무성, 시마네현, 태정관 등의 기관이 조회, 검토, 조사, 심의한 결과는 「죽도의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으므로 명심할 것이라는 태정관지령문으로 매듭지어졌던 것이었다.

40) 内藤正中(2008) 『竹島=独島問題入門 日本外務省竹島批判』新幹社. p.43.

한 변명과 논리를 전개한다. 역사적 기록을 왜곡 해석하여 만들어진 논리가 또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견해로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7】 죽도(기죽도, 울릉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태정관 문서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



위의 그림은 태정관문서에 첨부된 지도인데 지금의 울릉도인 기죽도(磯竹島)의 우측아래 작은 섬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중 큰 두 섬에 각각 한 글자씩 쓰여 있는데 송도(松島)라는 글자가 보인다. 당시 태정관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을 때 강화조약관련 ‘제 2장(領域)부분의 2조(a)’는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의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문서와 자료 7번 ‘태정관 문서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에서 보듯이 일본이 중세 이래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화조약에 근거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지난 2008년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10포인트 팸플릿’의 일곱 번째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죽도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만 미국은 죽도가 일본의 관할아래 있다고 거부했습니다.”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⁴¹⁾ 자료 1·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강화조약체결과정에서 주일대표부 정치고문이었다던 시볼드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로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화조약에서

41) www.mofa.go.jp(검색일2010.10.11)

는 다양한 이유로 독도가 한일양국 영토에서 배제된다.⁴²⁾ 다시 말해서 일본은 미국에 기대를 걸고 로비활동을 해 왔지만 미국은 한일양국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기본자세로 취해 왔다. 결국 독도영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이상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강화조약과 함께 일본의 독도정책은 외무성 팸플릿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 의존적 자세로는 독도 영유권주장 문제의 해결 전망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독도는 지난 1953년 이래로 한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주장이 양국 간의 현안이 됨으로써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한일관계는 미해결의 과거사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독도는 영토주권사항이다 보니 한일 양국 간에 더욱 민감한 문제로 비추어 질수 있다. 그렇다면 강화조약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음으로써 독도 영유권의 귀속주체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이들 초안 작성 과정을 설명하는 연합국 측의 사료를 단서로 영역 조항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 첫째,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일 어느 나라 소속으로도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둘째, 일본 외무성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울릉도 독도에 대해 명칭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죽도의일도」를 ‘죽도’또는 ‘송도’라고도 불렀던 섬 울릉도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작한 논리 위에 다시 새로운 논리조작을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소속이 빠지게 된 배경에는 시볼드의 로비도 주요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측이 영토와 관련된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엄중히 중립을 유지했기에 때문이다. 그리고 독도소속에 관련해서는 ‘제2장(領域)부분의 2조(a)’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독도가 일본에 의해 중세 이래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조약 최종안에서 독도에 대한 소속이 없다

42)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강화조약과정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소유권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자 미국은 섬의 소유권을 유인도 중심으로 표기하는 방침을 취하게 된다.

하더라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한국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역사적인 실증자료라면 일본정부의 주장은 강화조약 영역 조항의 자의적인 해석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위의 한국관련 강화조약의 모든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이 강화조약당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것은 독도에 대해 한국이 영토주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본 논문은 강화조약에 나오는 한국관련 제 2조, 제 4조, 제 9조 및 제 12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중국관련 제 10조 및 제 14조 (a)2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한국의 대응을 강구해 보려했다.

【参考文献】

- 정병준(2010) 『독도1947』 돌베개
 정일화 (2010) 『대한민국 독립의 門 카이로선언』, 선한약속출판
 内藤正中(2008) 『竹島=独島問題入門 日本外務省竹島批判』 新幹社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 歴史資料から考える』 新幹社
 内藤正中・金炳烈(2007) 『竹島・独島=史的檢証』 岩波書店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I』 동북아역사재단
 Joseph Stoltman. 「Aspiring for a Harmonious Global Society: The Role of Geography Educati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October 2014」
 한국 「외교부 독도」 사이트 www.mofa.go.kr
 일본 「외무성 죽도」 사이트 www.mofa.go.jp
 日本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
 防衛白書：日本の防衛(防衛省, 2014).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独島關係資料集(I)-往復外交文書(1952~76)

논문 투고 일자 : 2017. 07. 09.
논문 심사 일자 : 2017.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7. 08. 04.

< 要 旨 >

独島と韓日関係: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関する考察

郭眞吾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基づく独島領有権に関連して、いわゆる「韓国条項」と呼ぶことができる部分は、第2章の領域部分の第2条に「(a) 日本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濟州島、巨文島及び鬱陵島を含む朝鮮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である。上記の規定には、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を放棄すると明記されている。ここに日本が韓国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領土として独島が明確にされていないがために後に韓国と日本の間ではいわゆる (a) の規定の解釈の不一致が見られ、学者たちの間で論争も起きている。この論文は、(a) の規定の解釈を通じ、独島が日本の領土とするのには限界があることを分析する。

Dokdo and Korea-Japan Relations: An Analysi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Kwak, Jin-O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re is a so-called 'Korean article' in Chapter 2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While this suggests that Japan recognizes Korea's independence and that it relinquishes all rights to Korea, Dokdo is not explicitly mentioned as part of the territory that Japan has to return to Korea, thus leading to a discord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a).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a),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claim that Dokdo is Japan's territory.